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령초과 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처리방법 알림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말소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압류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반납이 불가능해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법제처에서는 차령초과말소의 취지는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를 볼 때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08, '21.12.8.)
4. 따라서 행정관청에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소유주가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번호판 반납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사무관대우	유태종	시설사무관	박일용	자동차운영 전결 2023. 7. 11.
				보험과장 임월시

협조자

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4785 (2023. 7. 11.) 접수 택시정책과-24093 (2023. 7. 11.)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61 /전송 044-201-5587 / 1211sm@molit.go.kr / 대국민 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